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성 북 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208
----------	-----

제출년월 : 2023년 11월
제출자 : 성북구청장

1. 제안이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공영장례를 치르는데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과 사별자의 애도할 권리를 보장하고, 우리 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이 안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영장례 조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다.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라. 지원내용, 지원방법 및 신청과 결정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7조)
- 마. 점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8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예고기간 : 2023년 9월 27일~10월 17일(20일간)
-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비용추계 등 자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검토의견 반영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안 제8조 ▶ 지원금의 부정청구 환수에 관한 사항으로 부패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레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4) 법제심사 결과 : 검토의견 일부 반영

검토의견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및 미반영 사유
안 제2조제2호 ▶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반영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안 제4조제4호 ▶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으로 의미 명확화	미반영	서울시 25개 자치구는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조례」 및 「서울특별시 공영장레 업무안내 지침」에 따라 광역차원의 공영장레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시 조례 제6조제4호를 준용하고자 함. 또한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구속을 사법 용어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므로 간단하게 표현하고자 함.

5)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이외 다른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
2. “연고자”란 법 제2조제16호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구 내에서 사망한 자가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2.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인 경우로서 연고자가 장례 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사망 당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에 해당되어 구청장·동장·마을공동체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 ① 제4조제1호, 제4호의 경우 사망자의 인적사항, 연고자의 유무 확인 등을 거쳐 구청장이 지원대상을 결정한다.

② 제4조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8조(점검 및 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장례의식을 위한 현물 또는 현금 지급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영장례 조례안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생략

* 기존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을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따라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공영장례 비용은 시비 지원

- 안치료(시비 지원 초과분) 및 신문 공고료 구비 지원: 28,438천원(2023년 기준)

- 안치료: 23,972,000원(1,198,600원×20건)

- 신문공고료: 4,466,000원(638,000원×7회)

4. 작성자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 정 숙